

# 『2025년 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전담센터』 [예비]창업기업 모집 공고

스포츠산업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『2025년 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』 지원사업에 참여할 (예비)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
사회적기업전담센터 기관장

## 1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:** 스포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
- 지원대상:**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 중 (예비)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거나 필요한 기업
- 지원규모:** 총 25개사

사회적기업전담센터	서원대학교
지원규모	전국 25개사(충청권 기업 40% 이상 선발)

- 지원기간:** 2025.3~12월(약 10개월)

### 지원내용

- ① 사업화지원금 **최소 3,500만원~최대 6,500만원(평균 5,000만원)**

※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%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

※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[별첨1] 참고

- ② 사회적기업전담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

※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[별첨2] 참고

## 2

## 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자격** \* 자격요건 부합 시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우선 선정

①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

- 예비창업자: **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**

- 기존 사업자번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산업과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\*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인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. **다만,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지원기간 내 스포츠산업 창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.**

\* 이종업종에 대한 판단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,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별 판단 예정

②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7년 미만인 자

- 업력기준: **2018년 2월 18일(포함) 이후 창업한 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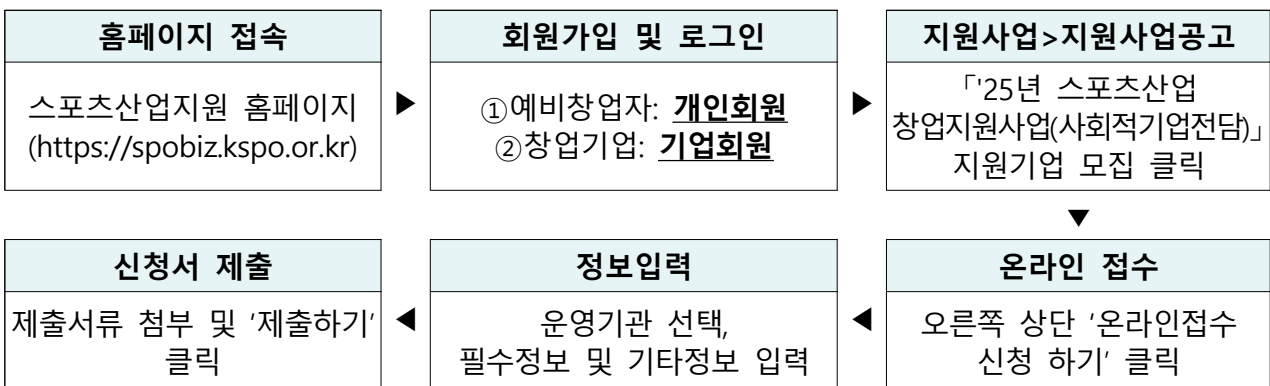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, **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**(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)

□ **신청기간**

○ (신청기간) **2025년 2월 17일(월)~3월 5일(수), 14:00까지**

\* 14:00 정각 전 제출완료 필수

○ (신청방법) 스포츠산업지원(<https://spobiz.kspo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

※ 제출 후 보완방법: 마이페이지 > 지원신청 현황 > 접수한 공고 클릭 > 보완하기 및 보완 사유 입력 > 접수한 공고 재클릭 > 서류보완 및 제출하기 클릭

○ (제출서류)

구분			제출서류	유의사항
공통			①사업신청서 1부(서명) ②사업계획서 1부(10페이지 이내)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(동의 및 서명) ④신청서에 작성된 수상내역, 경력사항,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	○신청서 서명 ○10페이지 미준수 시 감점가능 ○동의 및 서명확인 ○증빙 미제출시 불이익 가능
예비창업자로 지원 시	창업이력 O	창업후 폐업	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	○폐업한 사업체가 스포츠관련인 경우도 지원가능
		스포츠 미관련 창업	①사업자등록증 1부 ②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	○스포츠관련 창업 여부 확인용
	창업이력 X		①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1부	○창업이력 확인용
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시			①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1부 ②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4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④해당하는 경우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증빙서류	

※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

○ (문의처)

사회적기업전담센터	모집규모	연락처(전화번호)	이메일
서원대학교	25개사	043-299-8698	sw_sports@naver.com
		043-299-8229	

※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: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 02-410-1757/1753

<신청 및 접수 참고사항>

- 반드시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 및 해당 사업자로 회원가입, 지원사업 신청 필수
- 자격요건 부합 시 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, 중복 선정 시 최종 1개 지원사업만 선택
- 신청·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스포비즈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(보완하기 포함)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마감시간 정각에 맞추어 제출 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분 전 신청(보완하기 포함)완료 권장하며, **마감시간 임박시 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미 접수시 접수 불가능 양지**

**3****평가 및 선정****□ 평가방법**

- (평가방식) 1차 서류평가 → 2차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
- (평가위원) 센터별 내·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- (평가항목) 사업역량 및 계획 등을 평가하며 센터별 자율지표 추가 가능

**<서류평가 항목>**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사업역량	보유 역량, 참여의지, 개발동기	20
사업계획	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, 네트워크 확보계획 (투자, 거래처, 전문가 등)	40
사업모델	아이템 및 기술차별성,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등	30
기대효과	성장가능성, 스포츠산업 파급효과	10
합 계		100

**<발표평가 항목>**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사업역량	경영진의 보유역량, 사업화 의지, 개발동기	20
사업모델	아이템 및 기술차별성 및 구현가능성, 시장 진입·확대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	30
성장전략	자금조달 계획, 대내외 협력방안	20
성장가능성	BM확장성, 성장가능성	20
기대효과	스포츠산업 파급효과	10
합 계		100

- ※ 1차 서류평가 시 최종 선정기업수의 2배수 선정(접수기업이 2배수 미달 시 전체 발표)
- ※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,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※ 필요한 경우 운영기준에 반하지 않는 내에서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

**※ 서류평가 가점항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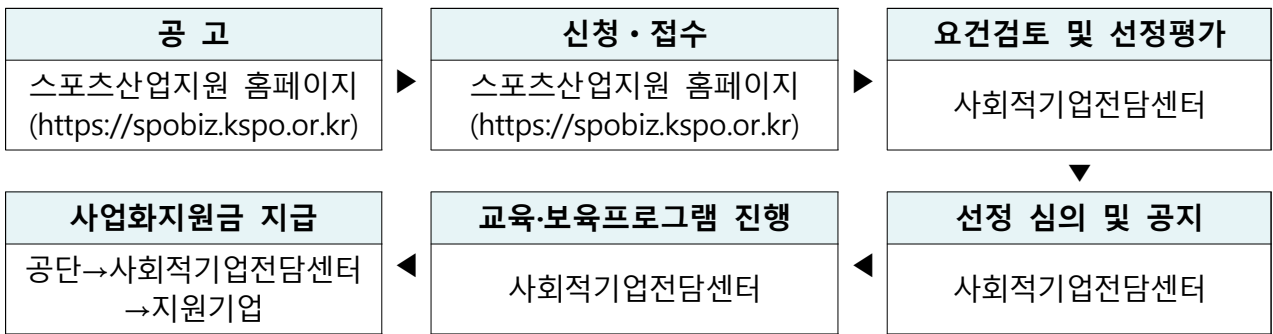
- '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·우수 수상팀(3팀) 서류·발표평가 면제, 장려상 수상팀(2팀) 서류평가 면제

□ **평가일정** ※ 하기 일정은 운영기관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- (서류평가) '25.3.17(월) 이내 결과발표 예정
- (발표평가) '25.3.17(월)~21(금) 예정 \*서류 평가 후 발표대상자 이메일 등 개별 통보
- (최종선정) '25.4.1(화) 예정

**4 기타 안내**

□ **세부 추진절차**



□ **유의사항**

-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및 이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을 수료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
  - ※ 선정 완료 후 타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/선발 지원 가능(단, 해당 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이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수혜는 불가)
-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타 기업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  - ※ 자격요건 부합 시 여러 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,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하므로 되도록 1개 사업에 신청 권장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이의제기는 최종 선정결과 안내 후 1회에 한해 창업센터에 제기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·기준 및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(예비)창업자에게 있음

## □ 의무사항

- 선정자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·보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□ 관련규정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문화체육관광부, 기획재정부)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-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
-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

“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.”



[별첨1] 사업화 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지급기준 및 유의사항

[별첨2] 사회적기업전담센터 특화프로그램(요약)

**[별첨1] 사업화 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지급기준 및 유의사항**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역/증빙서류						
인건비	인건비	1. 운영기관과의 지원사업 협약 이후 해당 창업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고용 전문인력 인건비(대표자, 일반 사무행정 제외)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급기준(월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조업</td> <td>법정최저~4,970천원</td> </tr> <tr> <td>스포츠 서비스업</td> <td>법정최저~4,125천원</td> </tr> <tr> <td>정보통신업</td> <td>법정최저~5,907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고용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산업별 상용임금 평균액 기준(2023년)	구 분	지급기준(월별)	제조업	법정최저~4,970천원	스포츠 서비스업	법정최저~4,125천원
구 분	지급기준(월별)							
제조업	법정최저~4,970천원							
스포츠 서비스업	법정최저~4,125천원							
정보통신업	법정최저~5,907천원							
		2. 일용근로자(1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도 고용 유지 기간요건 충족 필수)도 고용보험 가입 시 집행 가능 3.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급여 이체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						
		<증빙자료>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보험 가입증명원(4대보험 가입내역서 가능), 전문인력 업무참여 내역, 이력서 등 업무관련 학위경력 증빙서류, 급여 이체내역						
		<유의사항> 1. 협약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집행 2. 사업화 지원금의 40% 이내 편성 제한 3. 사업협약 종료 시점까지 고용유지 시 연말 일괄 신청 및 지급 (협약종료 해당월 급여이체 완료 고용보험 가입증명원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제출) 4. <b>창업지원사업 보육팀(기업)만 해당되며 액셀러레이터 지원기업은 집행 불가</b> ※ 세법, 근로기준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						
운영비	일반수용비	1. 사무용품 구입비 :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. 인쇄비 :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: 현수막, 간판, 상패 등의 제작비 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(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) 5. 비품 수선비 : 책상, 의자, 전자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6.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* 대행수수료 집행 가능,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- 창업 아이템과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/등록 관련 비용 -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 - 감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 7.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: 변호료 등 전문가 자문료 8. 광고료 :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등 9.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지급수수료) -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/인증비 *멘토링비 집행불가						
		<증빙자료> (공통) 사업계획서, 세금계산서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견적서, 비교견적 및 계약서 (계약인 경우), 검수조서(사진포함, 50만원 이상) (지재권 등) 출원(등록)청구서 및 등록증, 관납료 영수증 등 (광고료) 결과보고서(결과물), 홍보제작물 (기술이전비)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,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이전 완료보고서						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역/증빙서류
		<p>(참가비) 카탈로그, 참가비영수증, 참가 결과보고(사진, 참가확인서 등)  (시험/인증비) 계약서, 시험/인증서  (멘토링비) 멘토 이력서, 멘토링보고서(증빙사진 포함), 멘토수당지급확인서</p> <p>&lt;유의사항&gt;  1. 지재권 등  ① 대행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나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 ② 협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(협약 이후 출원 건에 대하여 집행 가능)  ③ 출원(등록)인은 지원기업 명의만 가능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불가능),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  ④ 공동출원(등록)의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비용부담  2. 광고료  ① 광고선전을 위해 외주용역하는 경우 일반용역비 기준 준용  ② 협약기간 내 홍보, 제작 등이 완료된 건만 지출 가능  3. 사무용품, 소모성 물품 구입비  ①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불가(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)</p>
	공공요금 및 제세	<p>1. 공공요금  - 우편요금, 전신(전보), 전화요금,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- 철도화물 운송요금  - 전기, 가스료, 상·하수도료, 오물 수거료  2. 제세  - 법령에 의하여 지불·부담하는 제세(자동차세 포함) 및 국내부담금, 협회비 기타 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-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</p>
	임차료 *사업비의 20% 이내 편성 제한	<p>1.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 2.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3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4.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5. 버스·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(일회성 행사 등) *월렌트, 장기리스 등 집행불가</p> <p>&lt;증빙자료&gt;  (공통) 임(전)대차계약서, 공유오피스 관리용역계약서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 사진 포함), 납부(이체)확인증 또는 세금계산서</p>
	교육훈련비	<p>지원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</p> <p>&lt;증빙자료&gt;  교육설명자료, 교육참가 신청서(참가 전 발급), 교육자료, 영수증(입금증), 교육 이수증, 임직원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</p> <p>&lt;유의사항&gt;  1.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'본인부담금'은 사업비 집행 불가, 교육비 환급 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 제외 금액만 지급 가능</p>

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역/증빙서류
	재료비	<p>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용 및 시험연구, 실험·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험·실습기자재, 시약, 시료 구입비</li> <li>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·기구, 선박,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</li> </ul> </li> <li>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, 보조 재료비, 매입부품비,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) 등</li> </ol> <p>&lt;증빙자료&gt; 세금계산서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</p> <p>&lt;유의사항&gt; 자산성을 띄는 완성품의 경우 사업화 특성상 재료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집행 불가</p>
	일반용역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</li> </ol> <p>&lt;증빙자료&gt; 세금계산서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), 결과보고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선금집행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금금지행보증보협 등 수취</p> <p>&lt;유의사항&gt; 1.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·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2.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외적으로 분할지급(선금금, 잔금)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의 경우 과업수행한 만큼의 비용 증빙(세금계산서) 필요 3. 용역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,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</p>
여비	국내여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 출장경비로서 창업사업 관련 교육, 행사, 박람회 참가 등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(교통비, 숙박비 지원 / 일비, 식비 지원 불가)</li> </ol> <p>* 여비산정기준 : 공무원 규정 적용하여 실비 정산</p> <p>&lt;증빙자료&gt; 창업사업 관련 행사·박람회 참여 문서 또는 공식 포스터 등 행사개최 관련 서류(일시·장소·목적 확인 가능한 서류), 숙박비 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, 교통비 카드매출전표 및 승차권(전자티켓 가능)</p> <p>&lt;유의사항&gt; 1. <b>창업지원사업 보육팀(기업)만 해당되며 액셀러레이터 지원기업은 집행 불가</b></p>

※ 회의비, 국외여비, 자산취득비 사용불가

**[별첨2] 사회적기업전담센터 특화프로그램(요약)**

<b>기관명</b>	서원대학교			
<b>기관형태</b>	대학	<b>소재지</b>	충청북도 청주시	
<b>센터유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지역형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화형(특화부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			
<b>[기관 특장점 등 자율작성]</b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국 유일 스포츠사회적기업 육성 기관</li> <li>■ 국내 최초 "창업교육"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(ESD) 공식 프로젝트 인증 획득</li> <li>■ 66개 회원사 보유한 스포츠사회적기업협회 통한 비즈니스 협업 및 네트워크</li> </ul>				
<b>[교육 프로그램]</b>				
<b>구분</b>	<b>시기</b>	<b>주제</b>	<b>교육방식</b>	<b>비고</b>
워크숍	4월	네트워킹 세미나	대면	필수참여
필수교육	5월	사회적기업가정신	대면	필수참여
		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·인증 전략		
		사회적가치지표(SVI) 교육		
특화교육	5월	선배기업과의 만남		
특화교육	5월	브랜드 이론정립을 위한 교육	대면	개별진행
맞춤형교육	5~6월	4개 과목 개설	비대면	필수참여
워크숍	8월	밋업워크숍	비대면	필수참여
워크숍	9월	스포츠사회적기업협회 워크숍	대면	선택참여
데모데이	11월	데모데이 및 수료식	대면	필수참여
<b>[보육 프로그램]</b>				
<b>구분</b>	<b>주요내용</b>			
<b>단계별 경영지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별 전략수립 정기 워크숍 개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네트워킹 세미나(4월), 밋업워크숍(8월), 데모데이(11월)</li> </ul> </li> <li>○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·인증 특화 1기업 10멘토링 진행(3~11월)</li> <li>○ 1기업 1특허 등록 지원(3~11월)</li> <li>○ 중기부 소셜벤처 인증(5~12월)</li> </ul>			
<b>플랫폼 구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포츠사회적기업협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(9월)</li> <li>○ SK하이닉스 청년창업파크 창업사업 연계(12월 이후)</li> </ul>			
<b>지역밀착 활동지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기업 1언론홍보 지원(3~11월)</li> <li>○ 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조직 지원 플랫폼 구축(3~11월)</li> <li>○ 스포츠 사회적기업연구소 이슈보고서 발행(3~12월)</li> </ul>			